

4 강사법이 불러온 학사제도 빈틈



후마니타스칼리지 측은 이번 일의 원인으로 2019학년도 8월부터 적용된 '강사법'을 꼽았다.

(사진=장혜림 기자)

재수강 강의 3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아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국제】 다전공을 준비 중인 2019학번 재학생 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다전공 신청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재수강 강의가 3학기째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수강신청이 불가능했던 탓이다. A씨는 “19년도 1학기에 수강한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를 재수강하지 못해 전체 평점이 낮다”며 “재수강을 하거나 학점 포기를 해서 평점을 만회해야 하는데, 3학기 동안 강좌가 개설되지도 폐강되지도 않아 세 학기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끓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수업을 수강한 B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B씨는 “어떤 학생도 2019학년도 1학기에 해당 강좌를 수강신청 할 때 3학기 동안이나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일부 수업에 대한 재수강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9학년도 1학기 개설됐던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 강좌(GED1405)는 지난 세 학기(2019년도 2학기, 2020년도 1학기, 2020년도 2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았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인해 교과목을 조정하면서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를 개설 강좌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제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해당 강좌를 다시 개설하거나 폐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재수강과 학점 포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는 1학기에 다시 개설 재수강 기회는 ‘한 번’에만 그쳐

논란이 지속되자, 국제캠 후마는 해당 과목을 최초로 개설하고 3학기가 지나고서야 해당 과목을 다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후마 행정실은 “21학년도 1학기를 포함해 앞으로 6학기 동안은 해당 강좌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강의를 처음 수강한 후 4학기 이내에 재수강을 해야 한다는 학칙에 따라, 오는 1학기가 2019학년도 1학기에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재수강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오는 1학기에 개설될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 과목을 수강신청하는데 실패한다면, 학생들은 재수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해당 강좌가 학점포기의 조건인 ‘교육과정 평가’에도 부합하지 않아 학점 포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랜 기간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이 재수강도, 학점포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 과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제캠 후마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개설 이후 지난 3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22개에 달한다. 이 중 2021학년도 1학기에 개설이 확정된 과목은 총 5개, 폐지가 예정된 과목은 총 8개다.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과목의 경우, 재수강 혹은 학점 포기가 불

가능한 상태다. 후마 배재형 학장은 9개 과목에 대해 “해당 과목들은 국제캠퍼스에서는 수요가 없어 개설하지 않지만 서울캠퍼스에서는 개설될 가능성이 충분해 교육과정 상 폐지가 불가능한 교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법 임용 문제 제한된 교비 등 불가피한 부분도

논란을 두고 국제캠퍼스 학사지원팀 김윤호 팀장은 “재학생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 수강신청에서, 재수강을 하려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정비해 나가며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마 행정실은 논란의 원인을 두고 2019학년도 8월부터 적용된 강사법 시행을 꼽았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배 학장은

“학교에 필요한 강의가 매 학기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3년 임용을 확정지으며 기존 강의를 모두 재개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존치가 가능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사가 맡는 강좌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후마 측은 학교가 일부 학생들의 재수강 요구 이전에 과목 선택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강의실 공간과 교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목을 원하는 만큼 개설할 수 없고, 따라서 과목이 가진 고유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재수강 기회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그럼에도 배 학장은 “일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사규정의 빈틈 신속한 해결과 예방에 집중하겠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학사제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학번 재학생인 C씨는 “후마 배분이수를 잘못 이수할 경우, 학점을 개선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 강좌 신청이 부담스럽기 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배 학장은 “이번 일은 교과목 개설 과정에서 많은 고려 사항들을 모두 포용하지 못해 발생한 학사규정의 빈틈이라고 본다”면서 “교과목이 특정 사유로 개설되지 못할 경우, 다시 개설될 때 까지 재수강 기한을 유예해주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교무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학점포기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적 자유의 원리’의 사례와 같이 강의가 개설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평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재수강도 학점포기도 못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김 팀장은 “개정이 논의된다면 학생들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종학생회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학사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각 단과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서울·국제 후마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